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66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김문수·김준혁·조계원
박지원·강경숙·허성무
양부남·이광희·백승아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그런데 학원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치러지는 과도한 시험 등은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4세·7세 고시, 황소 고시,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사교육 및 교육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감독 또한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습과정”을 “교습과정(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u>교습과정</u> ,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 ----- ----- ----- ---- <u>교습과정(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 -----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